
**소비자물가지수 및 비영리단체계정 관련
해외실무적용 사례 수집 결과보고**

2012. 12

통계개발원

목 차

I. 출장개요	1
II. 뉴질랜드 실무적용 사례	3
III. 일본 실무적용 사례	8
IV. 결론 및 제언	11

【부록】

1. 뉴질랜드 비영리조직 분류(NZSCNPO)	13
2. 보험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관련 질의서	16
3.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질의서	22
4. 중간년도 가중치 변경 관련 질의서	25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보험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방법 연구

-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뉴질랜드 및 일본의 실제 가격 반영 방법 파악
- 최근 GDP 및 가계지출에서 보험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주택, 생명보험 등 다양한 보험서비스 상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기 위한 기초 연구 수행 필요

□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방법 연구

- 최근 서민층의 체감물가를 반영하기 위한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재 작성중인 일본 통계청의 실제 작성방법 파악 필요

□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개발 연구

- 비영리부문의 총규모, 수입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인 비영리단체 위성계정(NPISA) 개발을 위해 기작성국인 뉴질랜드의 작성방법 파악 필요
- 최근 비영리부문이 부가가치 생산,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증가로 관련 통계의 필요성 증가로 외부의 개발요구 증가*

*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2차회의시(12. 6.12) 민간전문가 손원익 박사(조세연구원)가 나눔통계 개선을 위한 통계청 주관의 계정 개발 필요성 제기

2. 출장지, 기간 및 출장자

- 출장지 : 뉴질랜드 통계청, 일본 통계청
- 출장기간 : '12. 11. 4~11.14(9박 11일)
- 출장자
 -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5급 김혜련
 - 통계청 물가동향과 6급 이정화

3. 출장일정 및 업무 수행내용

□ 출장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1. 4~5	인천	뉴질랜드 웰링턴		
11. 6~8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통계청	보험서비스 반영 방법 및 비영리단체 계정 작성방법 파악
11. 9~11	뉴질랜드 웰링턴	일본동경		
11. 12~13	일본동경	일본동경	일본 통계청	보험서비스 반영 방법 및 소득계층별 지수 작성방법 파악
11. 14	일본동경	인천		

□ 업무 수행내용

【소비자물가지수 개선】

- 한국의 현 보험서비스 반영 현황, CAPI 사용방법 등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방법 설명

- 뉴질랜드 및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포괄범위 등 한국과의 조사 및 작성방법에 대한 차이점 파악
- 뉴질랜드 및 일본 통계청의 작성담당자로부터의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 서비스의 가격조사범위, 사용 조사표 등 상세 가격측정 방법 파악
- ILO 물가지수 매뉴얼 논의 등 생명보험 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일본 통계청 작성담당자로부터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방법 파악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개발 연구】

- 비영리단체의 정의, 포괄범위, 분류 등 계정 작성 방법론 파악
- 사업체등록명부, 국세청 행정자료 등 위성계정 작성에 이용되는 기초 자료 및 연계방법 파악

II. 뉴질랜드 실무 적용 사례

1. 보험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작성목적

- 소비자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접근법 (acquire approach)*을 채택하여 작성
 - * 지불 및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동안 실제적으로 취득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
- 생명보험서비스는 1993년부터 투자적 요소가 없는 정기보험을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
 - 생명보험은 저축과 투자로 간주되어 일반적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시 제외되지만 정기보험의 경우 위험에 대한 보장만을 제공하고 중도 해약금 등 투자적 요소가 없기 때문임

□ 분류

- 보험서비스는 기타 상품과 서비스 대분류 중 하나의 중분류 항목으로 생명보험, 주택보험, 주택재산보험, 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으로 구성
- 보험서비스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의 1.70%이고 생명보험은 0.69%임

〈보험서비스 항목별 가중치 비중〉

(단위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타 상품과 서비스(7.13)	보험(1.70)	생명보험(0.69)
		주택보험(0.19)
		주택재산보험(0.25)
		의료보험(0.18)
		자동차보험(0.38)

□ 작성방법

- 보험서비스의 가치는 총보험료가 아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순량적 접근법(net approach)을 이용하여 측정
- 보험서비스의 가중치는 순량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가격측정은 현실적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총량적 접근방법 사용

**총보험료 + 추가보험료 - 지불청구액
- 계리적 준비금의 변동**

- 가중치는 국민계정의 가계소비지출자료(HCE: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를 사용하고 가격측정은 우편조사를 통해 분기별로 조사
- 주택(dwelling), 주택재산(contents) 및 자동차(vehicle) 보험의 보험료는 분기일반보험조사(Quarterly Survey of General Insurance)를 통해 수집하고, 의료 및 생명보험회사는 별개의 조사표를 발송
- 매분기 동일수준의 조사범위가 유지되도록 하기위해 여러개의 범주와 위험요소를 조사

〈보험서비스 항목별 범주〉

분류	주택보험	주택재산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조사명	분기일반보험조사(QSGI)			별개의 조사표 발송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수준 · 증권외의 특징 - 지불청구 기록, 부유한 추가증권 등 			접근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소유자의 나이 · 주택의 특징 - 위치, 주택연령 및 크기, 건축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소유자의 나이 · 강보경보기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운전자의 특성 - 나이, 위치, 성 · 자동차엔진의 배기량과 최대보험지급액 · 자동차 안전측정 - 자동차 알람 또는 도난방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범위 · 가족의 특징 - 나이, 관계 및 부모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소유자의 특징 - 나이, 성 등) · 증권소유자의 건강상태 - 흡연/비흡연

2.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

□ 작성목적

- 자원봉사와 비임금 근로의 측정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에 2004년 기준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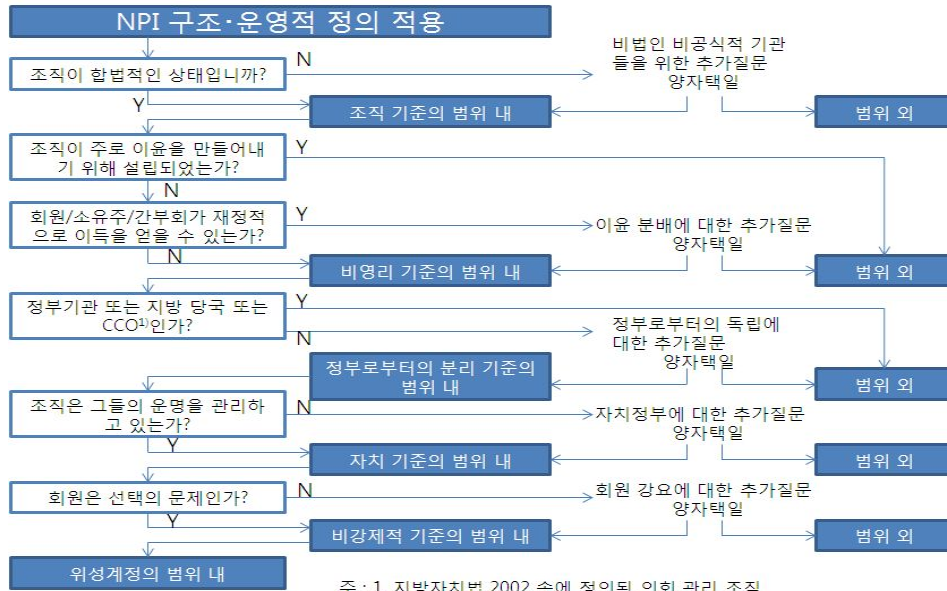
- 최근 기부법(charities Act) 검토서 작성을 위한 논의문서를 2013년 작성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
 - 비영리단체수, 임금근로자, 자원봉사자수, 비영리단체의 GDP 기여도, 자원봉사의 GDP기여도에 대한 자료 요구
- 따라서, 현재 2010년 기준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을 검토중에 있음

□ 비영리단체의 정의 및 분류

- UN에서 제시한 5개 기준*에 적합한 제도단위를 비영리단체로 정의하고 5개 기준별 의사결정도(그림 1)를 이용하여 결정

- * ① 조직화(organization), ② 비영리 및 이윤미배분(not-for-profit/non-profit-distribution), ③ 정부와 조직적 독립(institutionally separate from government), ④ 자체적 운영(self-governing) 및 ⑤ 자발적 참여(non-compulsory)를 충족하는 조직

〈의사결정도〉



□ 비영리단체의 분류

- 비영리단체의 분류는 경제활동에 의해 정해지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초하여 UN에서 권고하는 국제비영리단체분류(ICNPO)를 따라 뉴질랜드 비영리조직 분류(NZSCNPO)를 작성
- 문화 및 오락, 교육 및 연구 등 12개 대분류와 49개의 중분류로 구성(【부록 1】 참조)
- INCPO와의 차이점은 교육및연구(02)에서 유아교육이, 개발및주택(06)에서 마우리족 통치조직이 추가되었고 지원및보조서비스가 각 분류에 추가되었다는 것임

※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NCP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Non-Profit Organizations
 EZSCNPO: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Non-Profit Organizations

□ 이용자료

- 비영리단체수는 아래의 세가지 자료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작성시는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의 자료 활용할 예정
 - 뉴질랜드 통계청의 사업체명부(Business Frame)
 - 국세청(Inland Revenue)의 행정데이터베이스(administrative database)
 - 기업청(Companies Office)의 등록자료(register)

〈이용자료별 개요〉

	사업체명부	행정데이터베이스	등록자료
작성기관	뉴질랜드 통계청	국세청	기업청
대상	i) 한해 상품및서비스세(GST) 지출 또는 판매액이 30,000 달러 이상, ii) 고용인이 1명 이상, iii) IR10 소득(임대수입, 이자 및 배당금, 총소득)이 40,000달러 이상의 세가지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소규모 비영리단체	소규모 비영리단체
이용정보	사업형태, 제도부문 및 산업활동의 세가지가 비영리단체 분류에 이용	자격신탁(qualifying trusts), 법인협회 및 비법인협회로 분류	자선신탁과 법인협회의 목록

- 수입, 지출 등 재정 정보는 매년 조사되는 뉴질랜드 통계청의 「기업체 조사(enterprise survey)」를 이용
 - 종교단체를 제외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별도의 조사표를 통해 소득, 지출, 이윤, 고정자산 구매 및 자기자본에 대한 정보 수집
 - 종교단체에 대한 재정 정보는 현재 비전네트워크(vision network)의 교회등록부, 기존 연구자료, 기업청 보유 보고서 등을 이용
- 자원봉사인력의 가치는 뉴질랜드 통계청의 「98/99 시간사용조사(time use survey)」에서의 자원봉사 인력의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추정

12세이상인구의 총자원봉사시간
 = 12세이상인구의 평균자원봉사시간 × 12세이상 총인구

□ 구성 계정

- 생산계정, 소득 및 지출계정, 부분적 자본계정으로 구성
 - 비영리단체의 소득원천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액, 정부계약, 도박 서비스, 회원회비 및 기업협회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임

〈뉴질랜드 비영리조직 분류(NZSCNPO)〉

	SNA ⁽²⁾ -based	Extension 1 ⁽³⁾	SNA ⁽²⁾ -based plus extension 1	Extension 2 ⁽⁴⁾	Total
Non-profit institutions satellite account					
\$(000)					
Production account					
Gross output	7,119,834	82,235	7,202,068	3,311,970	10,514,038
Sales of goods and services	4,869,708	...	4,869,708	...	4,869,708
Non-market output provided free	2,250,125	82,235	2,332,360	3,311,970	5,644,329
Intermediate consumption	3,479,672	...	3,479,672	...	3,479,672
Value-added	3,640,162	82,235	3,722,396	3,311,970	7,034,366
Compensation of employees	2,611,090	...	2,611,090	...	2,611,090
Volunteer labour valuation	3,311,970	3,311,970
Taxes on production	227,676	...	227,676	...	227,676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401,680	...	401,680	...	401,680
Operating surplus	399,715	82,235	481,950	...	481,950
Income and outlay account					
Income	3,566,252	82,235	3,648,487	3,311,970	6,960,456
Operating surplus	399,715	82,235	481,950	...	481,950
Investment income	478,107	...	478,107	...	478,107
Interest received	345,971	...	345,971	...	345,971
Dividends received	132,135	...	132,135	...	132,135
Current transfers	2,688,430	...	2,688,430	3,311,970	6,000,400
Donations received	1,905,396	...	1,905,396	3,311,970	5,217,365
Government grants	758,829	...	758,829	...	758,829
Net non-life insurance claims	24,206	...	24,206	...	24,206
Outlays	3,073,831	82,235	3,156,066	3,311,970	6,468,036
Donations paid	684,746	...	684,746	...	684,746
Net non-life insurance premiums	42,691	...	42,691	...	42,691
Interest payments	96,270	...	96,270	...	96,270
Non-market output provided free	2,250,125	82,235	2,332,360	3,311,970	5,644,329
Savings	492,421	...	492,421	...	492,421
Capital account					
Source of funds					
Savings	492,421	...	492,421	...	492,421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401,680	...	401,680	...	401,680
Capital accumulation	628,056	...	628,056	...	628,056
Net lending/borrowing	266,045	...	266,045	...	266,045

Ⅲ. 일본 실무 적용 사례

1. 보험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작성현황

- 기본분류지수에서 보험서비스 항목은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책임, 임의) 및 손해보험료로 관련 개별 대분류 항목*에 포함

* 10대 대분류 : 음식, 주거, 연료/광열 및 수도, 가구 및 가전도구, 의류 및 신발, 의료, 교통 및 통신, 교육, 문화 및 오락, 기타

〈보험서비스 항목과 가중치〉

(만분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주거	수리 및 유지	공사이외의 유지서비스	화재보험(49)
교통 및 통신	개인수송	자동차 관리	자동차 책임보험(34) 자동차 임의보험(168)
기타	개인용품	기타개인용품	상해보험(122)

- 생명보험료중 저축 및 투자성이 높은 적립형 보험은 제외하고 정기형 보험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격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보험서비스의 가치는 총보험료가 아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순량적 접근법(net approach)을 이용하여 측정
 - 보험서비스의 가중치는 순량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가격측정은 현실적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총량적 접근방법 사용
- 개별 보험서비스 항목은 보험대상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지수화됨
 - 【부록 2】의 ‘참고자료’ 참조

□ 질의 내용

- 【부록 2】 참조

2.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 작성현황

- 기본분류지수 이외에 특수분류지수체계의 세대속성별 지수 중 「근로자세대 연간수입 5분위 계급별 중분류 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 1965년부터 연간지수로 작성하다 1975년부터는 월별 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기본분류지수와 특수분류 지수(2010년)〉

지수종류		세부 구성 지수
기본 분류	재화.서비스 분류지수	재화.서비스 분류지수 (별도항목) 귀속임대료 제외 서비스지수, 공공요금 지수 등
특수 분류	세대속성별 지수	- 총 세대 중분류 지수 - 근로자세대 연간수입 5분위 계급별 중분류 지수 - 세대주 60세 이상 무직세대 중분류 지수 - 세대주 연령계급별 10대 비목지수 - 세대주 직업별 10대 비목지수 - 세대주 주거소유 관계별 10대 비목지수
	품목특성별 지수	- 기초적.선택적 지출항목별 지수 - 품목의 연간 구입빈도 계급별 지수
	계절조정 지수	(기본분류) - 총합, 신선식품제외 총합, 귀속임대료 제외 총합, 귀속임대료 및 신선식품 제외 총합,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총합 (재화.서비스분류) - 재화, 반 내구 소비재, 신선식품 제외 재화
	참고지수	- 라스파이레스 연쇄기준 방식의 소비자물가지수 - 중간년 Basket 방식의 소비자물가지수
	기타지수	- 1945년 이전 기준 도쿄도 구부 5대 비목지수 - 2005년 기준 전국.도쿄도 구부 중분류지수 - 소비자물가 지역격차 지수

□ 작성방법

- 가격자료는 기본지수의 자료를 이용하고 「가계조사」를 이용한 계층별 가중치 조정을 통해 작성
- 근로자가구*의 총소득을 이용하여 소득5분위를 결정하고 그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

* 가구주의 직업형태가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인 가구

□ 질의 내용

- 【부록 3】 참조

3. 일본 중간년도 가중치 변경관련 질문

□ 질의 내용

- 【부록 4】 참조

IV. 결론 및 제언점

□ 소비자물가지수 개선

- 해외 통계선진국은 투자 및 저축성이 높은 생명보험서비스를 제외하고서도 다양한 보험항목을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생명(정기), 주택, 주택재산, 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일본은 화재, 자동차 및 상해보험 서비스를 작성
- 따라서 우리나라도 파악된 해외 작성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시 보험서비스 항목의 확대·추가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우 가중치 조정만을 통해 총소득기준 근로자 가구만의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어 가처분소득, 전가구 대상 등 다양한 시산을 통한 비교 검토 필요
- 진정한 의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을 위해서는 계층별 소비 품목 및 가격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 및 조사대상처를 달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추가 조사비용 등 현실적으로 한계 존재하므로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필요

□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개발 연구

- 뉴질랜드는 비영리 부문의 경제 및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2010년 기준 계정을 작성할 것을 검토 중이므로 우리나라도 비영리 부문의 기초자료인 계정 개발을 지속·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 습득된 뉴질랜드의 비영리단체 계정 작성 방법을 향후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계정 작성시 애로점 발생시 뉴질랜드 업무 담당자와 의견교환 필요

□ 기타 소견

- 소비자물가지수 및 비영리단체 작성 관련 해외통계청의 업무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문헌연구나 e-mail 교환 등을 통해 파악하기 힘든 상세 작성방법 및 자료수집이 가능하였음
- 또한 향후 추가 질문사항 발생, 추가 자료 요청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업무 담당자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유익한 출장이었음

부록 1

뉴질랜드 비영리조직 분류(NZSCNPO)

대분류	소분류	설명
01. 문화 및 오락	01 100 문화 및 예술	매체 및 정보통신, 시각예술, 건축학 및 제도술, 공연예술, 역사, 문학, 유산 및 인본주의사회,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01 200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의 제공, 트레이닝, 체력단련, 스포츠 시합 및 경기
	01 300 기타 오락 및 사회단체	개인 및 지역사회에 후생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 또한 회원 및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제 조직인 서비스 단체도 포함.
	01 999 문화와 오락 스포츠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2 교육 및 연구	02 110 유아교육	유아교육 제공 단체(아이 돌보기 서비스 포함)
	02 120 초중등교육	초중등 수준의 학교교육
	02 200 고등교육	고등 교육, 학위수여. 경영학부, 법학 및 의학부 포함.
	02 300 기타 교육	특히 취업에 적합하도록 맞춰진 직업 및 기술훈련. 또한 단체가 교육 및 훈련뿐 아니라 정규 교육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는 성인/평생 교육 포함.
	02 400 연구	과학 및 기술, 사회과학, 정치학 또는 의학 분야의 연구 단체
	02 999 교육과 연구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3 보건	03 100 병원과 재활	부상, 유전적 결함 또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물리치료 및 다른 재활 치료를 포함하는 입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03 200 노인시설	입원환자 요양 간호 및 거주 간호, 심하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보호시설, 호스피스 서비스.
	03 300 정신건강 및 위기개입	정신병원, 정신질환의 외래환자 치료, 예민한 정신건강 상태에서 외래환자 서비스 및 상담.
	03 400 기타 보건서비스	공중위생 증진 및 보건 교육, 외래환자 건강치료, 외래환자 재활 의료서비스 및 응급 의료서비스
	03 999 보건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4 사회복지	04 100 사회복지	아동복지, 아동서비스 및 보육, 청소년 서비스 및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 자립 및 기타 인적서비스
	04 200 긴급구호 및 재난	재난/비상사태 예방 및 제어, 임시 대피처 및 난민 도움
	04 300 소득지원 및 유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금지원, 식량, 의복, 차량 및 기타 지원방식을 제공하는 단체.

	04 999 사회복지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5 환경	05 100 환경	오염 감소 및 통제, 천연자원 보존 및 보호, 환경 미화 및 녹지를 촉진하는 단체
	05 200 동물보호	동물 보호 및 복지, 야생동물 보존 및 보호, 가축서비스와 관련된 단체
	05 999 환경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6 개발 및 주택	06 100 경제, 사회 및 지역 개발	지역 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경제 및 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일반국민 행복을 향상하기 위한 능력
	06 120 마오리족 (tangata whenua) 통치조직	마오리족(tangata whenua) 통치조직
	06 200 주택	개발, 건축, 관리, 임대, 주택 용자 및 재건과 관련된 단체. 또한 주택지원과 관련된 단체.
	06 300 고용 및 훈련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직업 상담과 지도를 제공 및 지원하고, 직업 훈련과 고용을 통해 자급자족 및 소득창출을 촉진하는 단체.
	06 999 개발 및 주택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7 법, 변호 및 정치	07 100 시민 및 변호단체	변호단체, 시민권리, 도덕 및 시민 단체
	07 200 법률서비스	법률 서비스, 범죄예방 및 공공정책, 범죄자 갱생, 범죄피해자 지원, 소비자 보호 협회
	07 300 정치조직	행정관에 특정후보의 순위를 지원하는 활동 및 서비스
	07 999 법, 변호 및 정치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8 자선, 기금 및 자원봉사홍보	08 100 자선재단	개인 자선재단
	08 200 기금단체	기금단체
	08 300 자원봉사홍보	자원봉사자를 모집, 훈련 및 찾아주고, 자원봉사를 홍보하는 단체.
	08 999 자선, 기금 및 자원봉사홍보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09 국제	09 100 국제활동	교환/친선/문화 프로그램, 개발원조 연계, 국제 재난 및 구호단체, 국제 인권 및 평화.
	09 200 국제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10 종교	10 100 종교집회 및 협회	교회 및 신앙을 고취하고 종교서비스와 의례를 관리하는 유사단체.
	10 999 종교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11 기업 및	11 100 기업협회	기업 지사의 이익을 촉진, 규제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는 단체.
	11 200 전문가협회	전문적인 관심을 촉진, 규제하고 보호하는 단체.
	11 300 노동조합	고용인의 권리와 이익을 촉진, 보호 및 규제하는 단체.
	11 999 기업 및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지원 및 보조서비스	위의 활동 기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목적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단체	99 100 기타	농업, 어느 곳에도 분류되지 않은 숙박시설 및 소매와 같이,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전형적이지 않거나 충분히 다른 곳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타 활동.
	99 444 미상	
	99 555 응답거부	
	99 777 응답불명	
	99 888 범위외	
	99 999 무응답	

1. 보험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현황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책임, 임의) 및 손해보험료에 대해 가격은 모델 추정방법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 방법은?

○ 참고자료 참조

□ 가격은 총보험료를 쓰는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보험 회사의 내재적 수수료를 쓰는지? 총보험료를 사용할 경우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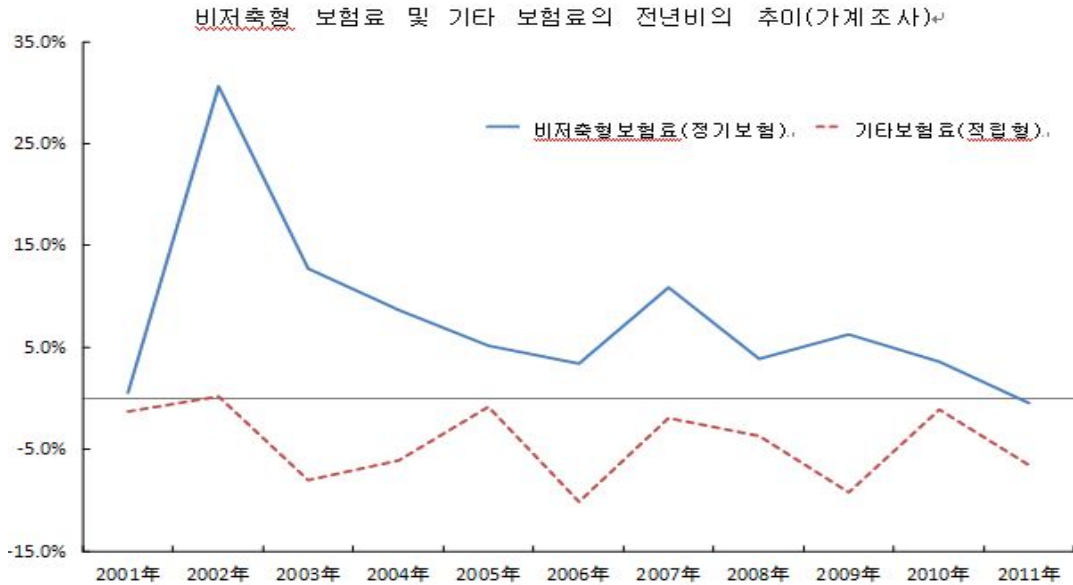
○ 총보험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순보험료와 내재적 수수료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임

※ 총보험료 = 순보험료(공동자금으로의 이전) + 내재적 수수료

□ 현재 한국에서는 생명보험료에 대한 가계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생명보험 서비스의 소비지출에서의 비중 등 현황은?

○ 적립형 생명보험은 2001년 이후 전년대비증가율은 일관하게 마이너스 추세임

○ 정기보험형 생명보험의 전년대비증가율은 거의 양의 증가 추세이지만, 상승률은 보합 경향임



- 생명보험 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에의 반영여부에 대해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결론을 냈는지?
 - 생명보험(정기보험)은 「현재의 불측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에 대한 서비스를 구입」이기에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의 대상임
 - 하지만 보험서비스에 대응하는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중치만 지출액의 3/10을 상해보험료로, 7/10을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상해보험료로 비례배분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
 - 적립형 생명보험은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대상외임

2. 해외 작성 사례

- 현재 일본통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외통계청의 보험서비스 가격 측정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자료 공유 가능한지?
 - 파악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생명보험 서비스를 반영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알고 있는지, 있다면 관련자료 공유 가능한지?

○ 파악하고 있지 않음

【참고자료】 보험서비스 모형 추정 방법

3180 화재보험료			
품 목	종 목	상 세	단 위
화재보험료	주택물건, 계약기간 1년, 기본료율(보험금액 1천엔에 대한 보험료율)	기업지정	1건
	구조조건별		
<p>가격 선정(종목)</p> <p>(1) 상기 종목의 가격을 선정한다.</p> <p>(2) 주택물건에 적용되는 건물은, 구조조건이 3구분(내화구조, 비내화구조, 아파트구조)으로 나누어져 있다.</p>			
<p>가격 선정(상세)</p> <p>(3) 원계약 건수가 많은 복수의 보험회사를 선정한다.</p>			
<p>지수 산출방법</p> <p>I. 조사 시읍면별 평균가격의 산출</p> <p>① 조사 시읍면별로 보험회사(a)별의 원계약 건수(q)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구조조건(i)별의 평균가격을 산출한다.</p> $P_{t,i} = \frac{\sum_a P_{t,i,a} q_{0,a}}{\sum_a q_{0,a}}$ <p style="text-align: center;">t : 비교시, 0:기준시, p:기본료율, q: 보험회사별 원계약 건수, i:구조조건, a:보험회사</p> <p>② 구조조건별의 계약건수(Q)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하여, 조사 시읍면별의 평균 잠정가격을 산출한다.</p> $P'_t = \frac{\sum_i P_{t,i} Q_{0,i}}{\sum_i Q_{0,i}}$ <p style="text-align: center;">Q:구조조건별 계약건수</p> <p>③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를 이용하여, 물가변동을 고려한 조정후 가격을 산출한다.</p> $P_t = P'_t \times \frac{I_t^{ave}}{100}$ <p style="text-align: center;">I_t^{ave} : 비교시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전국) 연평균지수</p> <p>II. 품목별 가격지수의 산출</p> <p>④ 조정후 가격을 기준시 가격으로 나누어, 조사 시읍면별의 품목별 가격지수를 산출한다.</p> $I_t = \frac{P_t}{P_0} \times 100$			

< 물건의 가격변동 조정의 사고 >	
<p>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화재보험을 물건의 재구입을 보증하는 서비스로서 파악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같아도 재구입 되어야 할 대상인 물건의 가격변동에 수반하여 지불해야 할 보험료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동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물건의 가격 변동분을 가미하기 위하여,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전국)를 이용하여 화재보험료의 지수의 실질화를 실시하고 있다.</p>	
<p>가격지수의 적용 조사 시읍면별</p>	

7370 자동차보험료(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품 목	종 목		단 위
자동차보험료(자배책)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보험기간 24 개월, 차종별 자가용차·경자동차(검사대상차) 지역별		1건
<p>가격 선정(종목)</p> <p>(1) 지역별(오키나와현 이외, 오키나와 본도, 오키나와현 낙도)로 상기 종목의 가격을 선정한다.</p>			
<p>지수 산출방법</p> <p>I. 차종(a)별의 신규계약 보험료(W)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하여, 지역(i)별의 품목별 가격지수를 산출한다.</p> $I_{t,i} = \frac{\sum_a \left(\frac{P_{t,i,a}}{P_{0,i,a}} W_{0,i,a} \right)}{\sum_a W_{0,i,a}} \times 100$ <p style="text-align: right;">t : 비교시, 0: 기준시, i: 지역, a: 차종</p> <p style="text-align: center;">W: 신규계약 보험료</p>			
<p>가격지수의 적용</p> <p>오키나와현 이외에 대해서는, 오키나와현 이외의 품목별 가격지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p> <p>오키나와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지역(오키나와현 본도, 오키나와현 낙도)의 품목별 가격지수를 적용한다.</p>			

7390 자동차보험료(임의)			
품 목	종 목	상 세	단 위
자동차보험료(임의)	자가용 소형승용차 자동차보험, 리스크 세분형 보험료, Non-Fleet등급 6등급, 대인배상 보험금액 무제한, 대물배상 보험금액 무제한, 인신상해보상 보험금액수 3,000만엔, 탑승자 상해보험금액수 1,000만엔(부위·증상별), 차량 보험금액수 200만엔(면책금액 1회째 : 0엔, 2회째 이후 : 10만엔), 보험	기업 지정	1건

	기간 1년(일괄 지불), 신차할인 적용 모델 케이스별		
가격 선정(종목) (1) 상기 종목의 가격을 선정한다. (2) 가입 조건(연령, 차종 등)을 지정한 모델케이스를 선정한다.			
가격 선정(상세) (3) 원계약 건수 상위의 보험회사를 선정한다.			
지수 산출방법 I. ① 보험회사(a)별의 원계약 건수(q)를 이용하여, 모델케이스(i)별의 평균가격을 산출한다. $P_{t,i} = \frac{\sum_a P_{t,i,a} q_{0,a}}{\sum_a P_{0,i,a} q_{0,a}}$			
II. ② 연령 구분 등, 모델케이스별의 웨이트(Q)를 이용하여, 품목별 가격지수를 산출한다. $I_t = \frac{\sum_i P_{t,i} Q_{0,i}}{\sum_i P_{0,i} Q_{0,i}} \times 100$ <p style="text-align: right;">t : 비교시, 0:기준시, i:모델케이스, a:보험회사 q: 원계약 건수, Q:모델케이스별 웨이트</p>			
가격지수의 적용 전국일률			

9928				손해보험료			
품목		종목		상세		단위	
손해보험료		보통 상해보험, 기본 계약, 직종급별 A,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엔, 입원 보험금(일액) 3,000엔, 통원 보험금(일액) 2,000엔, 보험기간 1년, 월부		기업 지정		1개월	
가격 선정(종목) (1) 상기 종목의 가격을 선정한다.							
가격 선정(상세) (2) 원계약 건수가 많은 복수의 보험회사를 선정한다.							
지수 산출방법 I. 보험회사(i)별의 원계약 건수(Q)를 이용하여, 품목별 가격지수를 산출한다. $I_t = \frac{\sum_i P_{t,i} Q_{0,i}}{\sum_i P_{0,i} Q_{0,i}} \times 100$ <p style="text-align: right;">t:비교시, 0:기준시, i:보험회사, Q:원계약 건수</p>							

가격지수의 적용 전국일률

1.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에 대한 개요

- 가중치 조정 방법으로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각 소득계층별 다른 품목(basket) 또는 다른 가격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검토의견은?
 - 소비자 물가지수의 품목을 선정할 때, 가계 지출상, 1만분의 1이상의 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계층에 의한 품목 구성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또, 물가지수는 가격수준의 비교가 아닌, 가격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라 구입 품목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여도, 가격의 시계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다른 가격을 측정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함
- 가중치 조정 방법과 다른 품목을 조사하는 방법중 어느 것이 더 소득계층별 체감물가를 잘 나타내주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 조사되는 품목은 전부 공통임
- 가중치로 가계조사의 2인 이상 근로자 세대의 소비지출 자료를 쓰고 있는데 1인가구는 왜 포함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는?
 - 1인가구의 조사 가구수는 745가구로 2인 이상 가구의 8,076가구와 비교하면, 조사 가구수가 적으므로,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1인가구를 포함한 총가구의 가중치를 이용한 총세대 지수는 참고 계열로서 공표하고 있음

□ 또한 왜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 세대만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 개인영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근로자 이외의 가구의 경우, 가계상의 지출인지, 영업상의 지출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한 품목(예 : PC, 자동차 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 관련

□ 근로자세대 연간수입의 정의 및 포괄범위는?

- 조사가구의 기입 개시월을 포함한 과거 1년간의 세금포함 수입으로 세대원 전원의 현금 수입을 합제한 값으로 정상수입과 비정상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정상수입 : 직장수입(세대주 수입, 세대주의 배우자의 수입 및 다른 세대원 수입), 사업·부업 수입, 농림수산업 수입, 다른 정상수입(재산 수입, 사회보장급여 및 송금)
 - 특별수입 : 수증금 및 그 외의 실수입

□ 일반적으로 소득분배 지표 작성시 이용되는 가처분소득, 균등화소득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 가처분소득은 실수입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지만, 가계조사에서는 연간의 비소비지출을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년간의 가처분소득을 산출하고 있지 않음
- 이에따라 소득계층별의 지표에는 연간수입을 이용하고 있음

3. 해외 작성 사례

□ 현재 일본통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 해외통계청 현황은?

- 파악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싱가포르 통계청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중인데 이에 대한 상세 작성 방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 공유 가능한가?

○ 파악하고 있지 않음

- 2008년 1월 중간년도 가중치 개편을 정기적으로 향후에 계속할 것인지?
- 계속 진행할 예정임
 - 2013. 1월에 발표될 중간년도 가중치 개편 작업 완료됨
 - 변동사항은 스마트폰과 피쳐폰의 비중변경으로 통신료와 핸드폰 2개 품목임
- 2008년 1월 개편시 상위분류 가중치는 고정, 일부 품목간 가중치만 변경되었는데, 향후에도 그럴 예정인지?
- 현재까지는 그럴 예정임
 - 기본적으로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시키지 않고, 비중이 변경이 큰 일부품목만 반영함
- 미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중간년도 전품목 가중치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지?
- 그동안은 검토하지 않았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음
 - 오늘 언론에 일부품목(TV 등)에 대한 현실반영 문제가 나와서 오전에 회의를 하고 왔으나,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될 문제라 결정된 사항은 없음
- 중간년도 가중치 변경시, 라스파이레스 산식이 아닌 연쇄+로워 방식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 없음

□ 향후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로 연쇄지표로 할 계획이 있는지?

- 아직까지 변경할 예정은 없지만, 검토는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여도 계산시 가법성 문제로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음